

## 건축사 특별검사원 제도 소고

### View on the Architect's Special Examiner System

곽선규 / 건축사사무소 폴리건  
by Kwak Seon-Kyu

특별검사원 제도에 대한 기고자 이 봉춘 건축사의 글(건축사 0301호) 잘 읽었다. 특별검사원제도(이하 특검제도)에 대한 문제점검과 대안제시에 대하여 한 사람의 건축사로써 감사를 드린다. 다만 이 글은 이 봉춘 건축사(이하 기고자)의 글을 읽은 후 생각나는 것들을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반추하여 본 특검제도의 제도적 보완을 논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글은 특검제도의 각론적 검토보다는 제도의 개념적 이해를 전제로 한 것임을 미리 밝힌다.

기고자는 그의 글 말미에서 “더하여 건축사 스스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의연히 책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의 민간이양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이루고 건축사의 위상과 전문인으로서의 긍지와 자긍심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전문인으로서의 역할고취로 우리 건축문화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며 글을 맺는다. 필자는 이 걸어가 합의하는 건축사의 문화적 소임에 대한 기고자의 의견에 전체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며 이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본론에 앞서 건물이 담당하는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보기로 한다. 건물은 좁게는 개인의 물리적, 지적 재산이며 넓게는 사회의 물리적, 지적재산이다. 즉 건물이 개인의 재산인 동시에 사회의 재산이라는 것은 건물이 개인의 사적인 대상물뿐만 아니라 사회라는 집단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공적인 대상물로도 귀결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물은 건물자체로 그리고 그 건물이 위치한 사회를 향해 소유해야할 기능적 덕목과 도덕적 덕목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좁게는 개인 삶의 수용과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넓게는 건물과 건물이 모여서 이루는 사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덕목을 건물이 담당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대지를 점유하는 건물 자체로서 완결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을 기능적 덕목이라 한다면, 도덕적 덕목은 좀 더 포괄적으로 건물이 상대적으로 대지주변과 사회에 어떻게 대응하며 소통해야 하는가에 요구되는 건물과 사회와의 관계성이라 하겠다. 또는 건물이 세워지는 현재적 시점에서의 요구를 기능적 덕목이라 한다면, 현재에 머무르지 않는 통시적 시점에서 건물이 담당하는 것을 도덕적 덕목이라 생각한다.

#### 건축사 공동의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

기고자가 설파한 건축사의 책임과 사명감은, 따라서, 이러한 덕목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 건축사의 전문가적 역할수행으로 보다 기능적이고 문화적인 건물을 창조해야한다는 보편적인 그리고 어쩌면 일상적인 가치에 기준한 건축사의 시대적 소명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건물설계를 의뢰 받은 건축사는 복잡한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종합하여야 한다. 대지현황, 건축주의 기대치, 자연환경 조절, 인공환경 대입, 문화적 코드, 건축법규, 재료, 사후관리 그리고 건축사의 디자인 의도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여 건물을 설계한다. 이 설계행위에 건축사의 책임과 사명이 디자인 의도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건물이 기존의 가치를 초월하여 극도의 이윤추구를 위한 소비 상품으로 문화적 코드를 달리하는 현재에서, 건물의 기능적 도덕적 덕목의 이해를 전제로 한 건축사의 사명감은 새로운 도전을 받고있다. 그 도전은 소비상품으로서의 건물가치추구와 이를 설계하는 건축사에 대한 사회적 이해이다. 건물이 이윤창출의 한 수단인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현상은 아니지만, 최근의 현상은 건물을 기존의 이해를 벗어난 첨예한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로 인해 경제성을 우선한 건물이 양산되고 있으며, 이는 기능적 도덕적으로 결여된 환경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1차 소비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2차 소비자에게까지 고스란히 피해를 주게 되었다.

한 시대 사람들의 생활과 습관, 가치가 보편적 가치를 이룰 때 그것을 문화라고 한다면, 경제논리의 힘에 의한 이러한 소비재생산의 문화 앞에서 건축사의 사명과 윤리를 홀로 논하기엔 거대한 이윤추구문화 앞에서 건축사의 위상은 너무 초라해 보인다. 더욱이 지금의 건축 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건축사 개인의 도덕적 책임과 사명감에 귀결시키기에는 너무 버겁다. 또한 현재와 같은 건축시장의 첨예한 시장경제 속에서 건축사의 도덕적, 윤리적 사명만을 주장하는 것은 건축사의 직업적 소명을 떠나서 개인의 생존소명 문제로까지 직결될 수 있다. 문화적 사명감을 위해 개인의 희생이 전제된다면 이것 또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빈곤해질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도적 전문인으로서 건축사의 책임과 자긍심, 위상만을 논하는 것은 너무 낭만적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특검제도는 이러한 사회 현상을 배경으로 건물이 담당해야하는 문화적 전제를 회복하지는 논의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특검제도는 의도하는 바와는 달리 그간의 현상에 대한 인과관계의 설정이 너무 협소하고 현재적 시점에 국한된 것에서 문제를 시작한다. 즉 제도의 힘으로 개선하려하는 이른바 특검제도가 표방하는 목

표- 건축부실과 부조리라는 반기능의 해소를 문화적 전제를 달리하는 집단과 집단의 관계(또는 제도와 제도의 관계)로서가 아니라 건축주라는 개인이 대표하는 집단과 건축사라는 개인과의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데에 있다. 건축주는 개인이되 개인이 아니다. 오히려 경제 문화적 전제를 공유하는 거대개인이자 집단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나 건축사는, 현재로는, 철저히 개인이다. 주지하시다시피 현재의 세계화 시대는 개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점점 빼앗고 있으나 자본과 문화를 등에 진 거대한 개인(집단)은 그 가능성을 더욱 독점하고 있다.

이제 건축사도 개인에 머물러서는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은 이제는 중지해야 한다. 좁게는 건물 사용승인 현장검사에서 건축사가 건축주와 생업의 열쇠를 쥐고있는 특별검사원이라는 2명의 골리앗을 상대하는 편향적인 제도의 폭력은 사라져야 하며, 넓게는 건축사들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소통방식과 제도를 수용하는 태도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 건축사와 건축사가 협력하여 집단(제도)의 힘으로 현상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지금의 질서와는 다른 가치를 부여하면서 우리의 삶을 재구성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비단 건축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실패한다. 물론 건축사 집단의 구조조정은 집단에 속해있다는 안도감이나 안일함 그리고 집단이기주의를 철저히 배격해야함을 전제로 하지만 현재의 "건축사 특별검사원 제도"를 기획로 해서 건축사 본연의 덕목과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건축사들은 공동체로의 위상을 정립하여야 한다.

현재의 특검제도에서 특별검사원에게 주어진 현장조사는 그것이 어떠한 징계를 초래하는 조사가 아니라 사전 현장조사로 사용승인에 저촉되는 사항을 점검하여 건축사로 하여금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건축사간의 협력체제로 변경되어야 한다. 즉 건축사 개인의 조사와 특별검사원의 객관적 조사를 기준으로 한 현장조사 공조체제로의 전환으로 제도의 순기능은 유지하면서 건축사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지금처럼 건축사와 특별검사원이 개인과 제도와의 만남이 되어서는 개인의 존립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으며, 그 개인존재의 위태로움은 건축사 전체의 빈곤함을 그리고 더 아가서는 이 땅의 건축문화를 더욱 빈곤하게 할 뿐이라는 것을 건축사들은 직시해야할 것이다. 이것은 건축사들의 궁극적 사명이 제도의 발전이 아니라 건축문화의 발전에 있기 때문이다.

## 건축공무원 업무의 민간이양을 반대해야 한다

현재의 특검제도의 또 다른 문제는 건축계 현상의 인과관계의 분석에서 정부조직을 배제한 것에서 시작한다. 앞서 건물은 개인의 재산이기에 앞서 사회의 재산이라고 했듯이 건물의 가치는 개인을 뛰어넘어 사회의 가치를 기증하는 문화의 보편적 잣대로 작용한다. 그 가치의 내면적 요구에 의한 사회 구성원간의 약속은 제도라는 틀로 규정된다. 제도라는 것이 인간집단의 어떤 기능, 즉 사회적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면 그 제도 자체를 생산하는 주체의 숭부적 속성이 배제되어서는 제도의 구체적인 맥락의 파악과 생산적인 논의가 불가능해진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규율하는 가장 강력한 자발적 억제기능을 담당하며, 사회에 구심력을 부여하는 인간의 습관, 행동억제, 기대치 등을 공인하는 힘이 있다. 자발적 억제기능이라 하는 것은 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기준한 제도의 규제와 의무의 틀을 전제로 한다. 언뜻 보기에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사람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의미하는 듯하지만 이윤동기가 전제된 그들의 경제적 행위는 너무나 쉽사리 문화적 상징물의 상업화와 착취라는 반문화적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우리가 사회의 비경제적 측면을 보호함에 있어서 자유시장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이 때문이며, 제도를 생산하는 한 주체인 정부조직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좁게는 상업주의에 쉽게 매수되지 않는 관료들과 넓게는 문화유산 보존에 참된 가치를 부여할 줄 아는 정부조직의 국토계획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특검제도의 한 목적인 건축부조리 척결을 위한 인과관계를 규정함에 있어 정부관료를 배제한 협소한 현상분석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부조리의 연결고리만 생산하고 있는 현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특검제도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건축문화의 발전 즉 도시의 거주적합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문화적 소임과 그를 위한 상호협력과 견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건축주와 건축사 그리고 정부조직 각자가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상호간의 관계에서 제도가 규정하는 규제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때 이 특검제도는 그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조직의 축소라는 시대적 소임은 인정하지만 국민과 국가의 기초적인 재산인 건물을 다루는 건축 전문업무의 민간이양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건축현장의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가 정부관료인 공무원이 행하던 업무이지만 공무원이 공무원으로만 집행

하여야할 고유업무라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는 기고자의 주장에도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업무 고유영역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업무간의 상호 협력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업무 고유의 책임과 의무까지도 변질시켜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굳이 건축문화의 소임에 대한 논의를 배제한다 하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재산인 건물의 관리를 책임지는 정부조직(공무원)의 고유업무는 유지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건축사와 특별검사의 현장조사와 확인에 의거한 소극적인 건축 행정처리와 그로 인한 건축사에 향한 편향된 책임부여는 수정되어야만 한다. 아무리 거대한 개인이라 하더라도 정부조직을 기반으로 한 제도 앞에서는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제약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특검제도의 긍정적 방향 제시

따라서 이 특검제도는 건물에 대한 전문인의 고유영역과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규정은 유지하되 건축주와 건축사, 건축사와 정부조직 그리고 건축주와 정부조직이 상호 협력하는 제도 차원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건축사와 특별검사의 현장조사와 확인업무는 거주적합성과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전문가적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제로 보완되어야 하며, 정부조직은 이들의 업무협조를 근거로 한보다 책임 있는 행정처리로 이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이는 시대가 요구하는 건축사의 전문가적 역량 측면에서 건축사들에게도 긍정적인 도전이 될 것이며, 정부조직의 기능적 업무수행경쟁력 향상이라는 긍정적 도전을 동시에 부여할 것이다.

우리가 제도의 부조리를 논하는 것은 제도의 파괴를 의미함이 아니라 그 제도의 발전적 모습을 모색해보기 위함이다. 제도는 제도 자체로 완벽할 수 있지만 그 운영자인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 어차피 인간의 사회조직이 이해를 발생시키는 배타관계로 형성되지만, 배타적 존재는 자기논리에 의하여 스스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 이는 제도를 통해 현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사회 문화 전반에 보다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믿음을 도출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것이 현재를 살고있는 동시대인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